

영조대 毓祥宮의 성립과公私 논의

김윤정*

〈차례〉

- 머리말
- 육상묘 성립과 親祭의 공식화
- 육상궁 성립과 官祭의 의미
- 맺음말

[국문초록]

성인군주를 지향하며 孝悌를 중시한 영조는 생모인 숙빈최씨를 위한 의례를 정비해 나갔다. 정통과의 구분이 강조되는 사친의례에서 적극적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전거와 논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위전교와 국정파행을 서슴치 않는 노획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중회와 이세희의 상소는 영조가 사친의례를 공문화하고 국가례로서 궁원제를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1744년 조중회 상소사건을 통해 육상묘가 성립되고, 영조의 친제가 공식화되었다. 영조는 지나친 사묘의례를 비판한 조중회의 상소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다. 정통과의 구분을 전제로 효를 실천하는 의례는 過隆이 아님에도, '사사로움[私]'로 규정하는 것은 왕을 업신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조는 "사적인 일 속에도 공적인 것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私廟의 私禮라도 왕의 의례로서 공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구차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의례의 시행이 효를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祝式을 제정하면서 廟·墓의 칭호를 정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상묘는 여전히 사묘로서 家人禮의 대상이었고, 영조의 親祭는 봉사지를 정하기 이전의 의례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왕의 친제는 초월적인 힘을 갖기보다 가인례와 限時性을 조건으로 조율되는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1753년 이세희의 상소를 계기로 숙빈의 시호가 정해지고, 육상궁이 官祭의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이세희는 왕후추송을 주장하며 조중회와 상반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는 자신의 뜻을 억측하고 모욕했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정통과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 숙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義起의 차원에서 시호의 追상을 요구했다. 시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연구원

호는 사제로 간주되던 육상묘 의례를 국가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영조는 시호를 근거로 궁원제와 관제의 시행을 단행했고, 이후 의례의 정비 과정에서公私의 조율은 불필요했다. 또한 육상궁은 더 이상 私廟가 아니라는 명제를 토대로, 이후 축식에서 ‘妣-子’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제어] 육상궁, 궁원제, 私親,公私, 諡號

1. 머리말

영조의 사친 숙빈최씨의 사당은 1725년(영조 1) 경복궁 북쪽 순화방에 淑嬪廟로 건립되었고, 1744년(영조 20)에 ‘毓祥’이라는 묘호를 정해 육상묘라 칭해졌다. 1753년(영조 29) 宮園制가 성립되면서, 毓祥廟는 육상궁으로 승격되었다. 육상궁과 소령원을 시작으로 조선후기 왕의 사친 후궁을 위한 궁원이 확대되었고, 현재는 육상궁을 포함한 일곱 후궁의 사당이 칠궁으로 통합되어 있다.

육상궁에 대한 연구는 숙빈최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축, 의물, 의주, 시호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다.¹⁾ 그런데 궁원제 성립과 관련된 사친 추송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사친추송은 존왕적 계제론에 기초한 영조의 존왕적 예학으로 평가되었다.²⁾ 그러나 ‘존왕적 예학’의 논리적 비약을 비판하면서, 효제 논리를 강조하는 연구가 제기

-
- 1) 소현수 외, 「조선시대 사묘(私廟) 칠궁(七宮)의 공간구성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이왕부,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辛行」,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이현진, 「영·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이영춘,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 『戊戌苦次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송인호·조은주, 「王室私廟 毓祥宮의 20세기 變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 대한건축학회, 2011; 박금진, 「조선후기 왕의 私親 宮園 연구: 칠궁과 원소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정해득, 「조선후기 사친추송과 능원제도」, 『조선시대사학보』 86, 조선시대사학회, 2018; 이미선, 「숙종대 왕실여성들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 『조선시대사학보』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문은희, 「영조대 毓祥宮式例·昭寧園式例의 制定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우정, 「영조대 숙빈 최씨 추송과 가상시호加上諡號의 의의」, 『국학연구』 51, 한국국학진흥원, 2023; 장경희, 「조선후기 칠궁七宮 소장 목조감실과 왕실공예품의 보문寶文 연구」, 『인문과학연구』 38,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 2) 정경희, 「조선후기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4.

되었다.³⁾ 영조는 효제 논리를 극대화하여 왕권의 정통성 확립 및 왕실의 안정된 계승을 바탕으로 유교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실리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효제 논리’에 더해 왕의 親祭를 통한 正禮化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왕이라는 존재는 자신 개인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 들여 성스러운 것으로 정당화시킬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왕의 친제’를 “강요의 힘을 실린 명령과 같은 언어”라고 규정했다. 왕의 지속적인 친제의 행동을 통해, 情禮였던 숙빈묘 의례가 國家祀典에 등록된 육상궁 의례로 正禮化되었다고 설명했다.

정례화 개념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인을 ‘왕의 친제’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왕의 힘과 위상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례화의 과정을 논증하지 못했고, 私禮로 간주되는 사친의례의 경우 ‘왕의 친제’라도 공적인 위상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 따라서 정례화의 과정은公私의 영역을 조율하는 영조의 대응 논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조선시대 왕의 공적·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내수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군주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공적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도 왕실의 가장이라는 사적 성격을 가진 이중적인 존재”임에도, 성리학적 군주론의 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양상에 주목했다.⁵⁾ 성인군주로서 君師임을 자부한 영조는⁶⁾ 더욱 왕의 공적인 위상을 중시하고 私禮로 간주된 사친의례를 공적인 영역으로 견인하는데 집중했다.

이 글에서는 영조의 공사 논의를 토대로 육상궁이 성립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조중회의 상소를 계기로 육상묘가 성립되고, 영조의 친제가 공식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인된 친제를 위한 묘

3) 임민혁, 「조선 후기 영조의 효제 논리와 사친추숭」, 『조선시대사학보』 39, 조선시대사학회, 2006, 116쪽.

4)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8쪽·171쪽.

5) 이인복, 「조선중기 내수사(內需司)의 운영과 공사(公私) 논쟁」, 『역사교육논집』 70, 역사교육학회, 2019, 173쪽.

6) 김자현 저, 김백철·김기연 역, 『왕이라는 유산』, 너머북스, 2017, 60~67쪽.

호와 축식의 정비는 육상묘가 家人禮를 적용하는 私廟임을 전제로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세회의 상소를 계기로 육상묘가 육상궁으로 승격되고 국가례로 편입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영조는 숙빈의 시호를 정한 후, 이를 명분으로 궁원제와 官祭의 시행을 단행했고 사례가 아닌 국가례를 기준으로 육상궁 의례를 정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조는 성인군주로서의 정당성을 토대로 효를 다하되 過隆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유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禪位를 내세우는 영조의 정치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조는 사친추숭에 대한 조중회와 이세회의 상반되는 주장을 대립시키면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사친의례를 마련할 수 있었다.

2. 육상묘 성립과 親祭의 공식화

1) 조중회 상소와 私禮의 공론화

1744년 3월 7일 ‘육상’과 ‘소령’이 廟號와 墓號로 정해지면서 숙빈묘는 육상묘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3월 8일 숙빈묘 展拜禮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이루어졌지만, 4개월 전에 있었던 趙重晦(1711~1782) 상소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영조가 조중회의 상소를 계기로, 친제의 공식화를 위해 사례의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중회는 陶菴 李縉(1680~1746)의 문인인 노론 관료로서, 1743년(영조 19) 11월 24일 정언에 임명된 후 4일 만인 28일에 영조의 사묘의례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조중회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첫째 영조의 잦은 전배례기로 인해 거동 시 예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비판했다. 둘째, 사묘

7) 전배례는 제사와는 달리 배례를 행하는 간략한 의례로, 숙종대 덕흥대원군묘, 경종대 대빈묘에 전배례를 행한 전례가 있었다. 영조는 즉위 이후 숙빈의 기일이 있는 3월에 정기적으로 전배례를 거행했고(『영조실록』 권11, 3년 3월 戊戌), 그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잦은 전배례를 행했다.

의 仲朔時祭를 영조가 親祭하는 문제를 지적했다.⁸⁾ 영조는 약 석달 전인 8월 3일에 “즉위 이후 처음으로 사묘의 중삭 제사를 한번 거행하고자 한다”고 하명하고, 5일에 사도세자와 함께 사묘에서 經宿한 후 6일에 친제를 지내고 환궁한 바 있다.⁹⁾ 조중회는 삼헌과 축문을 갖추는 중삭 시제를 영조가 친제하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11월 29일 영조는 조중회의 상소에 분노하여 책상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자에게 선위할 것을 하명했다. “조중회가 나를 몹시 모욕하였으니, 다시는 이 자리에 입어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삼정승이 앞장서 만류했다.¹⁰⁾ 영조는 자신이 종묘와 사묘의 의례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묘에 삼헌을 행한 적이 없고 사묘의 제문과 제물을 공적으로 마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조중회가 정리에 치우쳐 예절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은 왕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에 “내가 경들을 만나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이니 경들이 세자와 함께 조중회를 烹刑에 처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하면서,¹¹⁾ 이후 신하들의 請對를 거부했다.

12월 2일 영조는 폭설을 헤치고 사묘에 전배하겠다고 하명했다. 신하들이 만류하자, “임금을 업신여긴 죄는 토죄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버이를 위한 전배는 막으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12월 3일 진시에 숙빈묘에 거동하고, 이어 화평옹주의 집에 나아가서 2경에야 환궁했다. 이후에도 영조는 선위를 주장하며 청대를 거부했다.¹²⁾ 선위전교의 환수를 청하고 150여 건의 公事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¹³⁾ 12월 8일 대신 이하 三司가 대궐문을 밀치고

8) 『영조실록』 권58, 19년 11월 丁未.

9) 『승정원일기』 제 962책, 영조 19년 8월 3일 “傳于韓師得曰, 庚子以後, 中朔之禮, 欲一行之, 而尙稽, 再明展拜私廟, 經宿行禮, 翌日回駕, 令儀曹舉行.”; 『영조실록』 권58, 19년 8월 丙辰 “上親祭于私廟, 仍歷臨孝章廟, 還宮.”

10) 『영조실록』 권58, 19년 11월 戊申.

11) 『승정원일기』 제 965책, 영조 19년 11월 29일 “又敎曰, 予於私廟, 有何祭文, 自外製進之事乎? 有何祭物, 自外備入之事乎? 予之見卿等, 畢於今日矣. 卿等須與元良, 烹重晦, 以慰予心, 是所望也. 上曰, 展拜私廟, 是至情所在, 人子報本之道, 有何不可? 而反受侮辱至此, 豈不痛骨乎?”

12) 『영조실록』 권58, 19년 12월 辛亥; 壬子; 癸丑.

13) 『승정원일기』 제 966책, 영조 19년 12월 9일 “臣等之連日求對, 至於伏閣而排闥者, 只由二事, 向

들어가 회정당 앞뜰에서 冠을 벗어 놓고 새벽까지 엎드려 청대했다.¹⁴⁾

이러한 소동을 거쳐 12월 9일 사시에 비로소 대신들의 入侍와 의관의 入診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자신이 종묘와 사묘의 의례를 명확히 구분하였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중회를 비판했다. 사묘에 궁인을 보내 제사했을 뿐 삼헌을 하지 않았고 사친의 신주에 봉사자의 이름을 쓰는 旁題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열거하며, 예에 어긋나는 바가 없음을 항변했다. 조중회는 자신뿐만 아니라 항상 근신했던 숙빈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물러날 마음만 있고 더 이상 다른 뜻은 없으며 기운도 쇠약하여 수용하기가 실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¹⁵⁾

김재로는 조중회 혼자서 소견인 ‘망녕된 상소’일 뿐이라고 치부하면서, 영조의 사묘 전배는 지극한 효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칭송했다. 신하들은 조중회를 비난하면서도, 언관인 조중회의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영조는 조중회의 黨心을 지적하면서 편당하는 조중회를 팽형에 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편당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팽형은 너무 지나치다고 맞섰다.¹⁶⁾

이에 영조는 팽형을 거두고 조중회의 삭직만을 명했지만, 신하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꺾문을 밀고 들어온 신하들의 排闥 행위를 “편당하는 마음을 품고서 몰래 소란을 일으켜 그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으

日舉動時判付中, 有只出以下十二字, 而臣等於其時, 急於舉行, 未及審察, 及夫堂筭之出, 而其慮實深, 臣等之不卽繳還, 不免溺職, 而既知之後, 則不可不卽請還也, 大小公事不下者, 凡一百五十餘度, 而其中啓覆文案, 立春不遠, 而亦不下, 依然是閉閣時貌樣.”

14) 『영조실록』 권58, 19년 12월 丁巳.

15) 『승정원일기』 제 966책, 영조 19년 12월 9일 “癸亥十二月初九日巳時, 上御熙政堂. … 卽今私廟, 則予自入承大統之後, 不過送一宮人往祭而已. 若欲備三獻, 則豈無其人而不爲乎? … 私親之意, 如此謹慎, 而由于子之故, 致辱至此, 豈不痛迫乎? 今予只有追去之心, 更無他意. 氣且漸紓, 酬應實難. … 至於私廟, 自予入承之後, 旁題杳然無期, 尋常痛悼, 無一可慰, 而又有如此侵侮之言, 予心當何如也?”

16) 위의 책 “金在魯曰, 其疏非衆人之議, 而趙重晦獨所見也, 如此妄疏, 豈有更爲之慮乎? 殿下於私親, 若有過隆之舉, 則爭之爲可, 而聖上識見卓越, 孝思出天, 太廟酌獻, 未嘗有闕禮之時, 至於雖遠代陵寢, 無不徧謁. 聖孝如此, 臣等常相與欽誦, 但於太廟, 則事體有重, 故殿下雖欲無時數幸, 有不得任情爲之, 而至於私廟, 數次展拜, 有何可議之事乎? … 臣等竊慮殿下, 或殺趙重晦, 則有傷於聖德矣. 俄以已無烹之之意爲教, 誠爲多幸矣. … 上曰, 予惡其黨心之極爲巧惡, 故欲烹黨人, 有何過重乎? 宋寅明曰, 雖有黨心, 烹之則誠過矣. 殿下既以已無殺意爲教, 其次處分, 則唯當聖意是聽矣.”

로 비난하면서, 사간원 관원들을 삭직했다. 17) 다시 신하들의 청대를 거부하고, 12월 11일에는 배달을 선도한 김상적과 궁문을 지키지 못한 중관들을 처벌했다. 18)

이러한 상황에서 연일 혜성이 출몰하고 세자의 嘉禮가 임박하자, 박문수, 유언호 등 여러 신하들이 연거푸 청대했다. 세자의 납채일인 12월 20일에 영조가 비망기를 내리면서, 조중회 상소사건은 일단락되었다.

名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의 근본은 학문이며, 학문의 근본은 孝悌일 뿐이다. 아, 비록 대등한 상대 이하라도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조상을 존중한다. ‘私’ 한 글자는 ‘公私’의 ‘사’가 아니라 정통을 존송하는 의리이다. 이 이치는 분명하니, 비록 명류가 처리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임금에 정통을 돌아보지 않고 지나치게 존송하는데 신하 된 자가 예로써 쟁집한다면 이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다. 임금이 혹 불초하여 조상에게 예를 다하지 못한다면 신하 된 자가 情禮로써 권하는 것은 임금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孝로 인도하는 것이다. 임금이 지나치게 존송하지 않는데 신하가 사사롭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아, 어찌 임금의 조상을 업신여기면서 그 임금에게 예를 갖추어 공경할 리가 있겠는가. 19)

영조는 명류들이 강조하는 名의 근본을 학문, 학문의 근본을 효제로 규정하면서, 상대방의 조상을 존중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사친인 숙빈은 정통과는 구분되는 존재이지만, 영조가 효를 다하는 대상이었다. 영조는 사친의 ‘私’는 公私의 사가 아니라 정통과의 구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친의 ‘사’는 ‘나 혼자만[我之所獨耳]’의 의미로, 『중용』에서 ‘人欲之私’와

17) 위의 책 “去夜舉措，群下雖過，殿庭免冠，其君露坐，其由則何，非曰阿諛而請之，挾雜黨心，暗地惹鬧，動其君之心，作群下之舉，即此一款，請竄請放，有何諛悅，…噫，爲今臣子，其若有尊君之心，宜乎尊其本矣。以此曰乎名，以爲媿媿，堯·舜孝悌之道，其將掃矣。可謂寒心，頃日入侍院臣及今日入侍耳目之官，豈爲先削職。…雖然，其君若此，而其臣則尚在於官名，曰有紀綱乎？趙重晦爲先削職。”

18) 『영조실록』 권58, 19년 12월 庚申.

19) 『승정원일기』 제 966책, 영조 19년 12월 20일.

구분되는 ‘形氣之私’로 인식되었다. 형기지사는 聲·色·臭·味에 감응하는 사사로움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²⁰⁾

따라서 영조는 정통과의 구분이 명백하다면, 효의 차원에서 숙빈에게 예를 다하는 것은 지나치게 존숭하는 과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용이 아님에도 공정함과 대비되는 사사로움으로 사친의례를 규정하는 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결론은 사친의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왕을 업신여기는 ‘慢君’이자 국정 파행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다음 해인 1744년 1월 全恩君 李墩의 상소를 계기로, 영조는 과용을 엄금하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은군이 한나라 文帝와 명나라 神宗의 故事를 인용하여 숙빈의 王후추송을 청하자, 영조는 “내 家法을 문란케 하고 내 조정의 근거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문책했다.²¹⁾ 이러한 영조의 처분은 정통을 중시한다는 원칙아래, 사묘의례를 王후추송과 구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1월 19일에는 숙빈의 3대 先祖를 追贈하도록 명했다. 영조는 “私親의 ‘私’자는 公私의 ‘사’자와 다름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친의 3대가 아닌 父만 추증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중전의 3대 추증과 비교하면서, 종2품 同樞에게도 허용되는 3대 추증의 대상에서 국왕의 사친이 제외된 것은 事體의 경중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영조는 숙빈의 3대를 추증하고, 이에 따라 숙빈을 母로 기록한 <괄고조도>를 수정하도록 하명했다.²²⁾ 신하들은 과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조에게 ‘慢君’의 혐의를 감수하면서 반대의견을 내지 못했다.

20) 『艮齋集』속집 권1, 「中庸質疑」“形氣之私. …【眞西山曰, 私, 猶言我之所獨耳. 今言私親私恩之類, 非惡也.】… 人欲之私. 【胡雲峯曰, 此私字, 方是不好底.】”

21) 『승정원일기』제 967책, 영조 20년 1월 2일 “尙魯曰, 小臣以職掌事, 有所仰達者矣. 三四日前, 全恩君墩, 上疏到院, 觀其措辭, 則實是重大事, 所當捧入, 而聞渠處地, 不齒平人, 非可陳疏者, 故退却矣.”; 『영조실록』권59, 20년 1월 壬午.

22) 『승정원일기』제 968책, 영조 20년 1월 19일 “上曰, 私親之私字, 乃與公私之私字不同之義, 承宣知之耶? 象漢曰, 臣豈不知? … 國舅之先, 爲坤殿也, 而贈三代之先. 噫, 彼同樞, 士庶相雜, 而贈榮三代. 噫, 以國君之私親, 只贈其考, 其不若同樞之贈先, 於事體, 輕乎重乎? 且八高祖圖修正以入之後, 事體尤重. 其令該曹, 依常時贈職之例舉行, 而一遵八高祖圖舉行, 書畢.”

3월 4일에는 효장세자빈인 현빈과 1월에 冊嬪된 세자빈(혜경궁)의 전배례를 추진하다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영조는 ‘조모의 의리(祖母之義)’를 언급하면서, 두 며느리의 전배 의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私禮’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하교를 번복했다. 두 며느리의 전배는 인정과 예법상 진실로 당연하고 체모가 막중하지만 역시 ‘사례’일 뿐임을 강조했다. 전거가 없음에도 다른 예를 참조하여 사례를 행하게 한다면, “后妃가 마음대로 사례를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임을 지적했다.²³⁾ 영조가 사례의 남발을 경고한 것은 사묘의례의 공론화를 위한 포석으로 추정된다.

전배례 전날인 3월 7일에 영조는 다시 조중회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사친의 은혜를 회상하며 『시경』 「육아」편을 3번이나 반복해 읽는 것으로 그리움을 드러냈다. 「육아」편은 돌아가신 부모께 효를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읊은 시로서, 숙빈을 향한 영조의 효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사시에 신하들을 인견하여 현빈과 세자빈의 전배를 중지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면서, 사묘의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내가 사묘에 展拜하는 것은 私情을 조금 꺾려는 것일 뿐이니 어찌 예를 지극히 할 일이 있겠는가만은, 임금의 모든 행동거지는 반드시 光明正大해야 한다. 사묘에 거동할 것을 朝紙에 써냈지만 제사를 지낼 때의 儀節은 밖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중회가 나온 것이니, 실은 내가 조중회의 사건을 자초한 것이다. **사적인 일 속에도 공적인 것이 있으니[私之中有公]**, 祝式을 이 때에 미쳐 바로잡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함부로 짓는 폐단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 이 때문에 학문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린 임금이 모자지간의 정만 알아 예에 맞게 절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려고 한다면 임금과 신하의 분란한 싸움이 한바탕 크게 벌어질 것이다.²⁴⁾

23)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5일 “傳于洪象漢曰, 意欲行之之中, 二嬪之欲一展拜, 情禮當然下教矣. 中夜興思, 蹶然而坐, 何則? 此則情禮固當然也, 而體貌雖重, 此私禮也, 此後不顧體重, 只曰私禮傍照而行, 則后妃之任情私禮, 由我而創也, 凡事宜謹於初, 以杜其弊, 賢嬪·世子嬪一體行禮之命, 特寢焉.”

영조는 사묘의례를 私情과 관련된 私禮로 간주했다. 따라서 사묘의 의절은 밖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지만, 왕의 사묘 거동은 조지에 올리는 공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괴리로 인해 조중회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영조는 “내가 조중회의 사건을 자초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에 “사적인 일 속에도 공적인 것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묘의례는 私禮지만 공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법을 정하지 않으면 후세의 어린 임금에 母子의 정만 중시하여 지나친 의례를 행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로 인해 임금과 신하의 분란이 커지는 문제를 거론한 것은 조중회 상소사건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조중회 상소사건을 계기로 사묘의례에 대한 공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의례 정비가 이루어졌다. 영조는 양극단의 조중회와 전은군의 주장을 대립시키면서, 효를 다하되 과용하지 않는 사친의례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노회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慢君’의 혐의로 신하들을 압박하면서, 공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

2) 사묘의례 정비와公私의 조율

영조는 조중회 사건을 재론하면서 사묘의례는 사적이지만 공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축식을 제정하면서 廟·墓의 칭호를 정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육상묘는 여전히 私廟로서 가인례의 대상이었고, 영조의 친제는 봉사자를 정하기 이전의 의례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먼저, 묘호의 講定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3월 7일 축식 논의 과정에서 영조는 칭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조중회와 전은군을 소환하여 신하들을 압박했다. 당일에 廟號가 ‘毓慶’, 墓號가 ‘昭寧’으로 정해졌는데, ‘육경’이 계운궁(인현왕후)의 園號와 같다는 점에서 ‘육상’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사

24)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묘 혹은 숙빈묘, 숙빈사우로 불리던 숙빈의 사당이 육상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영조가 새로운 칭호의 필요성을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私廟’라는 호칭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묘는 ‘사적인 사당’의 의미로, 주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용어이다. 인조대 사묘는 정원대원군묘였고, 경종대 사묘는 대빈묘였다. 숙빈사우는 영조에게만 사묘일 뿐이므로, 후대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칭호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기존 칭호의 사용이 불합당한 이유를 강조했다. 爵號인 ‘숙빈’은 숙종이 내린 아름다운 칭호인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존봉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貞淑’이라는 徽號가 있지만 사묘에서 잠시 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셋째, 선왕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곳을 仁壽宮이라 하여, 별도의 칭호를 정한 전례를 제시했다.²⁵⁾

김재로는 칭호가 과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찬성했고, 오광윤은 『춘추』를 근거로 사친의 제사를 위한 궁의 존재를 인정했다. 廟와 宮, 墓와 園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김재로는 駙馬의 집안도 ‘궁’이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궁’자는 적합하지 않고, 살아 계실 때와 구분하기 위해 ‘廟’자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원’자는 특별히 안 될 것은 없지만 영조가 과용을 원하지 않으므로 ‘墓’에 칭호 2자를 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²⁶⁾

반면 송인명은 경솔하게 정할 일이 아니므로 추후에 논의할 것을 아뢰었지만, 영조는 “명성을 추구하는 폐단”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밖의 근거 없는 논의를 선동하기 좋아하여 반드시 사친을 추존하려는 뜻

25)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上曰, 私親徽號, 有貞淑二字, 而私廟不過暫時所稱, 又以封爵之號稱之者, 非所以尊先王嘉錫之道也. 仁壽宮, 以先朝後宮, 尙有仁壽宮之號, 又有薛里供上之事, 況此乎? 爲此下教之後, 元良不從予而從誰也? 私廟有表稱之號, 然後可爲報本之意矣. 卿等之意, 何如? …傳曰, 今春下教, 詳諭予意, 而雖然, 人子事親, 報本爲先, 既以昔年賜號, 爲尊奉之道, 則豈可常稱於大小文字? 而私廟之稱, 只用於當宁者.”

26)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在魯曰, 過隆之事, 臣等當限死爭之, 而稱號則有何不可乎? 此則當講定名號, 而駙馬家亦稱宮官字, 似不襯合, 而且與在世之時不同, 以廟字代之, 似好矣. 上曰, 提學之意, 何如? 光運曰, 承統爲君, 爲私親立宮以祭, 詳載於春秋, 既有禮經明文, 夫豈有可疑之端耶? 此乃應行之禮也. …在魯曰, 園字別無不可, 而聖意既不欲過隆, 則襯合, 終不如廟字, 廟字上, 加表稱二字, 則似好矣.”

이 있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하여 다시 조중회를 거론했다. 동시에 사친추송을 주장했던 전은균을 소환하여 “오늘 안으로 즉시 정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전은균 같은 자가 없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압박했다. 영조는 8일 전배례 때 칭호를 告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예관과 관각당상 등을 불러 2글자의 칭호를 정하도록 명령했다.²⁷⁾ 술시에 신하들이 廟·墓號를 정해 올렸고, 다음날 육상묘 전배 시에 새로운 칭호를 고유했다.

다음으로 공식적인 친제 축식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3월 7일 영조는 조중회를 소환하여 사묘의례의 공공성 논의를 주도하면서, 축식을 강조했다. 축문 하나 읽는 것은 ‘지극한 정리’에 따른 사적인 행위일 뿐이지만, 후세에 과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바꿀 수 없는 典例’로서 축식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명은 “축문 없는 제시는 한때의 權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후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인정과 예의에 합당한 축문의 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⁸⁾

축식의 핵심은 제사의 대상과 국왕의 자칭을 정하는 것이다. 축문의 구성 요소 중 의례주체인 祭主와 대상 신의 이름, 그리고 둘의 관계를 밝히는 호칭은 각각의 정체성과 위격 그리고 두 대상의 관계를 공표하며 규범화한다.²⁹⁾ 따라서 축식의 규정은 공적인 논의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영조는 선조와 인조 대의 전례를 검토하여 축식을 결정하고자 했다. 친제

27) 위의 책 “寅明曰, 此非率易講定者, 舉動後博詢而定號, 何如? 上曰, 近來名弊勝矣. 光運曰, 怪異之言齟齬, 則外間, 或知之以臆對, 故大臣以此持難矣. 上曰, 卿等所謂待從容時講定之言是矣, 而不爲書出之後, 我國之人, 好動外間浮議, 必知之以有追尊之意矣. 且定號後, 勢將以告由事復往, 人君一動, 三軍萬民皆動, 其弊如何? 趙重晦果不知予心矣. 東朝三更後就寢, 故昨宵已仰稟, 而今日內若不卽定, 則安知此後不無全恩君乎? … 況事體重, 而亦宜一體告由於今番展禮之日, 禮官及館閣堂上, 卽爲牌招, 與大臣商確, 入侍稟定, 入直儒臣, 亦爲入侍, 書畢, 光運曰, 私廟之廟字, 陵墓之墓字上, 加二字乎? 上曰, 古有永慕殿·永思殿之例, 卿等知而善爲之, 可也.”

28)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私之中有公, 祝式若不及此釐正, 以爲不易之典例, 則安知後世無濫弊乎? 繼體雖重, 昔日母子之義亦重矣. 讀一祝文, 別無所益, 而此處至情所在, 故不顧學問, 幼君但知母子之情, 而不以禮節之, 若欲過爲, 則一場上下之紛鬧, 爲如何哉? 予之此教, 亦愛惜群下也. … 寅明曰, 無祝不過一時權宜, 殿下之講定祝式, 非但爲裕後之道, 實有合於情禮矣.”

29) 권용관, 『조선시대 왕의 사친(私親) 의례와 축문(祝文): 의묘(懿廟) 의례의 축문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5, 종교문화비평학회, 2019, 134쪽.

여부와 왕의 축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조실록』, 『석담일기』, 『경연일기』 등을 검토했다. “선조가 대원군 기제사에 참석했지만, 술을 올리는 작헌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선조의 친제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사가례에서는 봉사인이 주인이 되고 봉사하지 않는 자는 축문과 작헌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친을 위한 친제와 축식의 전거를 찾기는 어려웠다.³⁰⁾

이에 영조는 덕흥대원군의 처인 하동부부인의 축식에 따라 대상인 숙빈의 호칭을 ‘妣’로, 자칭을 ‘子’로 정하는 방식을 문의했다. 신하들은 봉사자가 올리는 덕흥대원군 축식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³¹⁾ 육상묘 축식에는 ‘사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조의 자칭으로는 ‘국왕’ 2자를 제한했는데, 上下高卑에 무관하고 사가례에서 관직을 쓰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³²⁾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축식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전배례 이후인 3월 11일에 영조는 육상묘 축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妣-子’가 아닌 ‘사친-국왕’의 축식을 수용했지만, 家人禮를 근거로 ‘국왕’ 아래 자신의 이름인 휘를 쓸 것을 고집했다. 당 현종이 형제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잔 고사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집안사람의 사적인 예[家人之私禮]이다. 이미 사적인 예라면 상하 사이에 한 글자를 쓰는 것이 어찌 안되겠는가”라고 역설했다.³³⁾

30)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上曰, 宣廟朝親祭大院君之事, 在實錄耶? 光運曰, 未能詳知矣. 上曰, 春秋館堂郎出去, 實錄及日記謄來, 可也, 光運·明鼎退出, 在魯曰, 宣廟雖參大院君忌祀, 而無酌獻之禮矣. 寅明曰, 以私家言之, 奉祀之人爲主, 故不奉祀者, 無視文酌獻之禮矣. 象漢曰, 宣廟古事, 若無可考者, 則仁廟祭元廟之事, 當有之矣. 上曰, 然矣. 王者之禮, 可爲者爲之, 不當爲者不爲, 此事不可不講定, 日記謄來後更議, 可也. … 光運曰, 石潭日記及經筵日記謄來矣. 上曰, 提學讀之, 光運讀畢, 上曰, 皇字·孝字不爲之矣. 象漢曰, 孝字, 雖私家, 長子主祀之人外, 不敢用也.”

31) 사묘로 간주된 덕흥대원군묘와 인빈묘의 의례는 육상묘 의례의 기준이 되었지만, 봉사자 유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사묘의 제건과 신주의 이불이 이루어질 경우, 의주에 따라 예관을 파견하고 축식을 마련했다. 그러나 평소 제사는 봉사자가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사가례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면, 연잉군이 세제로 책봉된 이후 봉사자 없는 숙빈의 제사는 덕흥대원군과 인빈의 전례를 따르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윤정, 『大嬪宮의 연혁과 의례적 변화와 상상』, 『한국문화』 10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317~321쪽)

32)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7일 “上曰, 德興大院君·河東府夫人之古例, 不可用之於今日耶? 在魯曰, 極爲惶恐, 而今日事, 與德興大院君少異, 妣字·子字不可用, 故以私親二字仰達者此也. … 象漢曰, 國王二字, 上下高卑處皆用之, 如私家之稱官爵也.”

33)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1일 “上曰, 以家人禮言之, 無可諱故言之矣. 唐玄宗, 爲

사묘의례를 ‘가인례’로 규정하는 주장은 이미 조중회 상소사건에서 제기되었다. 송인명은 가인례에 근거하는 사묘의 전배례를 종묘의례와 명확히 구분했다. 예제가 엄격히 정해진 종묘에는 빈번히 전알할 수 없지만 가인례에 따른 사묘에는 마음껏 전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영조의 잦은 전배를 옹호했다. 또한 선조의 덕흥대원군 친제를 가인례로 규정한 율곡 이이의 해석이 중요한 전거로 제시되었다. 영조는 송인명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³⁴⁾

그러나 축식에 국왕의 휘를 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먼저, 휘를 쓰는 여부는 국가제사의 등급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었다.³⁵⁾ 민응수는 조선의 국가제사에서 오직 사직제에만 국왕의 휘를 쓰고 그 외 제사에는 단지 국왕이라고만 써서 차등을 둔다고 지적했다.³⁶⁾ 다음으로, 私家禮에서도 주제자만이 ‘孝子+名’을 쓸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재로는 이름을 쓰는 것은 ‘주제자’를 특정하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조는 육상묘의 주제자가 아니므로 휘를 쓸 수 없다”는 송인명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러한 신하들의 주장에 대해, 영조는 추후 봉사자를 정하기 전까지 자신이 지내는 特祭의 축식임을 강조했다.³⁷⁾

長衾大被, 與兄弟同寢, 人臣不可與人君同寢, 而此則家人之私禮也, 既有私禮, 則上下間書一字, 豈不可乎?”

34) 『승정원일기』 제 965책, 영조 19년 11월 29일 “宋寅明曰, 聖上雖不下教, 臣豈不知耶? 累次展拜, 固知聖心之出於至情矣. 殿下於太廟則雖欲頻謁, 事體嚴重, 有不可無時展拜, 而至於私廟, 則數次展拜, 不過出於家人禮, 家人禮, 固與太廟之禮有異矣. 宣廟朝先正臣之責玉堂也, 亦曰家人禮爲之, 有何所妨云云, 其言極當矣. 上曰, 家人禮之說, 是矣.”

35) 『현종개수실록』 권18, 9년 2월 丁亥; 『영조실록』 권31, 8년 6월 辛未.

36) 『국조오례의서례』에는 사직뿐 아니라 先農 · 先蠶 · 雩祀 · 文宣王 · 歷代始祖 등의 축문에 ‘朝鮮國王姓諱’, 嶽 · 海 · 瀆 · 山川 등의 축문에 ‘國王姓諱’라고 쓴다는 점에서, 민응수의 주장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친제를 원칙으로 축문에 성과 이름을 親押하는 제사가 황단과 사직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기타 제사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제 1080책, 영조 28년 3월 2일 “上曰, 祝文書姓者, 皇壇與社稷祭乎? 李喆輔曰, 然矣. … 洪鳳漢曰, 自上所見, 甚好矣. 自上親押者, 將以見誠意也, 如欲盡誠, 則姓諱必同爲親書, 然後方合於盡誠之道.”).

37)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1일 “應洙曰, 以我國言之, 社稷祭書御諱, 其外只書國王謹昭告于, 而無書諱之例, 故大臣之言如是矣. 以私家言之, 主祀之人, 書孝字名字, 而他子孫則不可爲矣. 今此祝式, 無古禮依倣, 而不過義起, 各別詳審, 可也. 在魯曰, 禮文以主祭爲重, 故主祭之人書名, 而殿下於毓祥廟, 既不主祭則書諱似如何云者, 左相之言是矣. 上曰, 有奉祀之人後, 不過參祭, 而至於特祭, 當有祝耶?”

다음날인 12일에 영조는 축식의 제정을 독촉했다. 봉사자를 정하기 전까지 친제하는 것으로, 의주없이 축식만 정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응수는 “축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조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가인례를 따라 ‘子’라고 하고 ‘名’을 칭해도 여러 신하들이 알 수 없지만 아버이를 섬기는 도는 正大해야 하기에 문의한 것임을 강조했다.³⁸⁾ 사묘의 축식은 가인례에 불과하지만, 효를 다하기 위해 정대함을 갖추려 한다고 주장했다.³⁹⁾

영조가 휘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두가지이다. 첫째, 모자의 의리에 주목했다. 국가의 왕통을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자의 의리가 있으면 이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신하들이 제사지낼 때 정승판서라는 관직만 쓰고 이름은 쓰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둘째, 휘를 쓰는 의미를 재평가했다. 청나라 사신에게 주는 어첩에도 휘를 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신하들을 비난했다. 또한 명산대친의 축문에도 휘를 쓰는 만큼 사친의 축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⁰⁾

영조는 휘를 쓰는 것이 타당하고 ‘당대 임금 때의 축문[當宇時祝文]’으로 각주를 달아 신중함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어 휘를 써서 올린 축식의 어구를 정비했다.⁴¹⁾ 축문은 자칭과 대상의 호칭뿐만 아니라 행위의 어구를 구분하여 제사의 위상을 규정했다. 먼저, 주제자가 대상에게 제사하는 행위의 경

38)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2일 “上曰, 有奉祀人後, 欲親祭則多掣肘之端, 此則講定是也, 而未定奉祀之前, 親祭及遣官致祭, 不過祝式, 而無儀註之可論, 有何講定之持難乎? 應洙曰, 祝式至重, 故然矣. 上曰, 上一字, 默想國典, 已知其不可稱, 而下一字, 既書私親, 則不書終涉如何? 故欲書之矣. … 先正文成公以爲, 有家人之禮, 有學宮之禮, 予欲爲家人之禮, 則稱子稱名, 非諸臣之所可知, 而事親之道, 當正大故問議矣. … 此正先正所謂家人之禮也, 此何煩複詢問? 而亦有予意, 其欲正大之意, 其不釐正之前, 恍然之心, 日復一日也.”

39)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4일 “上一字書之, 似如何, 下一字書之, 既無不可, 何必下詢於卿等哉? 但事親之道, 有一毫不出於正大者, 則終非孝也.”

40)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2일 “予意不欲苟且, 將改祝式, 而諸臣不即講定, 豈非慨然乎? 彼國使臣來時, 事當言之矣, 雖使臣御牒, 亦書國王某, 國家承統雖重, 有母子之義後, 祝文之書名無疑矣. 諸臣之祭親祝文, 若只書政丞判書, 而不書名, 則其意當如何? … 雖非大祀, 名山巨川, 既皆書之, 則于今此祝, 惟爲不書, 於心安乎, 否乎?”

41) 사친인 인빈과 대빈의 신주 이봉 시에 예관을 파견하면서 “某月日, 國王書御諱, 謹遣臣某, 敢昭告于某嬪某氏云云.”이라는 축식을 사용한 바 있다(『승정원일기』 제 554책, 경종 3년 5월 27일). 이 경우는 왕의 친제가 아니었으므로, 휘를 쓰고 ‘감소고’의 어구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하의 논의는 친제 시 축문의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종묘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제사에서 ‘감히 밝게 고합니다[敢昭告]’의 어구를 사용했다.⁴²⁾ 이와 달리 육상묘 축문에는 先朝 후궁의 축문에 쓰는 ‘敬祭’를 사용했는데, 당대 후궁의 축문에 쓰는 ‘侑祭’보다 위격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가 밝게 고합니다[謹昭告]’와 ‘밝게 고합니다[昭告]’ 등이 거론되었는데, 영조는 선조대의 전례를 따라 ‘경제’로 결정했다.⁴³⁾

다음으로 의례의 내용이 ‘伏以云云’으로 서술되고 마지막으로 제물을 갖추어 올리는 행위가 ‘謹以清酌庶羞, 式陳明薦, 尙饗’으로 규정되었다. ‘청작서수’는 ‘맑은 술과 온갖 음식’으로, 희생을 쓰지 않는 俗祭의 축문에 사용되었다.⁴⁴⁾ ‘삼가 진설하여 신명께 올립니다[式陳明薦]’는 국가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구로 왕의 행위를 표상했다. 김재로는 처음에 ‘공손히 전을 올립니다[恭伸奠獻]’로 정했는데, 영조는 “國王” 2자가 있는 뒤에는 ‘式陳明薦’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의 글이고 봉사자를 정한 뒤에는 ‘恭伸奠獻’이라고 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⁴⁵⁾

김재로가 처음 정한 ‘謹以清酌庶羞, 恭伸奠獻’은 구준의 『가례의절』에 근거하여 조선 사대부들이 널리 사용하던 축문의 어구이다.⁴⁶⁾ 김재로는 가인례로서의 사묘 축문은 사가례와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한 셈이다. 영조 역시 봉사자를 정한 후에는 『주자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동의하고 있다.⁴⁷⁾ 그럼에도 한시적이거나 국왕인 자신이 의례를 행할 때는 국가례에 따라야 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육상묘 친제 시 축식은 “維乾隆某甲, 國王諱

42) 『국조오례의서의』의 名山大川·城隍·七祀(敢告), 『국조속오례의』의 소헌궁(昭告)과 墓(致告)가 ‘감고소’라고 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3)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2일 “上曰, … 故祝式書諱後, 以當宁時祝文, 懸註爲計矣. … 上曰, 先朝後宮, 與當宁後宮, 祝式各異, 當宁後宮則曰侑祭于, 先朝後宮則曰敬祭于矣. 靈字改以明字, 而未書尙饗, 可也.”;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4일 “上曰, 外山川稍尊處, 謹昭告于之文, 亦有之矣. 在魯曰, 致祭忌辰, 當以敬祭于昭告于書之, 可也, 上曰, 宣廟朝稱考妃子, 而猶以敬祭于書之, 既有明證後, 遵守, 可也.”

44)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祝版」 “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宗廟俗節朔望·七祀·祭祭·司寒, 則稱牲醴庶品, 文宣王朔望及俗祭·城隍發告, 則稱清酌庶羞.】”

45)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4일 “上曰, 祝文末端, 卿以恭伸奠獻爲言, 而有國王二字後, 式陳明薦, 終是國家文字也, 有奉祀人後, 當以恭伸奠獻書之矣. 在魯曰, 聖教至當矣.”

46) 『사계전서』 권41, 『의례문해·제례』 “問. 忌祭祝文末端, 餘并同云云. 清酌庶羞之下, 依時祭用祗遷歲事字否? … 丘氏祝云, 恭伸奠獻, 鄙家常用之. 退溪亦用之云.”

47) 주 50) 참조.

【當宁祝文】，敬祭于私親淑嬪首陽崔氏，伏以云云，謹以清酌庶羞，式陳明薦，尙饗”으로 결정되었다. 48)

【표1】 축식의 비교

	일자	자칭	행위	호칭	대상	내용	제물	행위	
육상묘	1744	維~	國王諱	敬祭于	私親	淑嬪首陽崔氏	伏以云云	謹以清酌庶羞	式陳明薦尙饗
육상궁	1753	상동	상동	敢昭告于	先慈親	和敬淑嬪崔氏	상동	謹以醴幣庶品(時祭)*	상동
	1755	상동	子國王諱	상동	先妣	和敬徽德淑嬪崔氏	상동	상동	상동
종묘 (인경왕후)	상동	孝子嗣王 【臣】諱	상동	皇妣	光烈宣穆孝莊 明顯惠聖仁敬 王后金氏	상동	謹以牲幣醴齊 柔盛庶品 (時祭)	상동	

* 궁원제 성립 이후 축식은 시제와 숙결에 따라 구분되고 숙결 축식은 ‘清酌庶羞’를 그대로 사용함

마지막으로, 묘호에 맞는 관직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김재로는 “廟號가 있는 뒤에 守衛官을 정한다”는 점에서 소현묘, 효장묘 등과 같이 수위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영조는 수위관을 두는 것이 지나치게 높이는 과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봉사자를 세우는 것만 못하다고 인식했다. 威儀를 갖추는 국가제사와 달리 사가의 제사는 정성과 정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위관은 정성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성과 예에 알맞은 것은 봉사자를 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49)

영조는 봉사자를 敦寧府正으로 삼아 세습하는 대원군묘의 사례에 따라 숙빈의 봉사자를 따로 세울 것임을 강조했다. 추후 봉사자가 육상묘 제사를 주관하면, 『주자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사자를 정하기

48) 『승정원일기』에는 “上命象漢書祝式，國王諱【若遣官則書謹遣臣某，或書謹遣內侍，諱字下，書當宁祝文】敬祭于某嬪首陽某氏，伏以云云，謹以清酌庶羞，式陳明薦，”(『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2일)이라고 하여 ‘私親’과 ‘尙饗’이 빠져있지만, 논의 과정을 참고하여 추가했다.

49)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1일 “在魯曰，莫重儀禮，卒乍問不能仰對，而有廟號後，定守衛官之言，有之矣。上曰，予有所諒而定守衛官事，不張大耶？在魯曰，順懷廟·昭顯廟·孝章廟，皆有守衛官，…上曰，情先行者不計前，予若欲爲之，則敦寧正，當世襲矣。雖不過隆而別定守衛官，則終不稱情，國家祀事，不過威儀，豈如私家之致精致潔乎？…以此觀之，則情禮之稱當，終不如定奉祀也。”

전까지는 영조가 가인례에 따라 特祭로서 친제하는데, 그 의절은 사서인과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⁵⁰⁾

수위관은 정하지 않지만, “묘호를 이미 정하여 事體가 중하다”는 점에서 수묘인의 칭호를 개정하도록 명했다. 추후 봉사자를 세울 것이므로, 수직하는 사람을 官名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대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육상묘에 소속된 宮任의 예대로 시행하고 그 명칭을 정하게 하였다.⁵¹⁾ 12일에 수묘인의 명칭으로 김재로는 ‘典守’, 송인명은 ‘書題’, 홍상한은 ‘典護’를 제안했다. 영조는 수위관은 관직명인데, 서제는 잡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궁임의 예와 같이 典監으로 명명하고 6결을 給復하도록 하였다.⁵²⁾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육상묘의 의례는 가인례를 따르는 사례지만, 왕의 친제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영조는 효의 차원에서 정대한 의례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신하들의 동의를 구했다. 또한 숙빈을 위한 봉사자 선정을 원칙으로, 자신의 의례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영조의 육상묘 친제는 가인례와 限時性을 조건으로 공인되었고, 선위와 慢君을 활용하는 노회한 정치력까지 요구되었다. 왕의 친제는 초월적인 힘의 결과라기 보다는 영조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50)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1일 “上曰, 定奉祀後, 用朱子家禮, 可也, 應洙曰, 殿下特祭時, 不可用士庶人之禮矣. 上曰, 然矣.”

51) 『승정원일기』 제 970책, 3월 11일 “傳曰, 既定墓號, 事體重, 守直之道, 豈可仍稱常名? 然將來當有奉祀之人, 於守直之人, 不可以官名, 亦不可以太卑, 一依京宮任例施行, 而其稱, 講確以稟.”

52) 『승정원일기』 제 970책, 영조 20년 3월 12일 “上曰, 守墓人名號, 亦議定耶? 應洙曰, 左相以爲, 名以書題似好, 而領相則以爲, 以典守爲名, 有若掌職事者似宜云矣. 上曰, 書題之名, 不爲襯着矣. 象漢曰, 以典護稱之, 則似好矣. 上曰, 守衛官卽官名, 而書題輩, 不過雜職廳上拜而已, 名雖同而實則異矣. 若宮任例爲之, 而名以典監, 可也, 應洙·象漢曰, 好矣.”

3. 육상궁 성립과 官祭의 의미

1) 이세희 상소와 諡號의 追上

1753년 6월 25일 육상묘·소령묘가 육상궁·소령원으로 승격되면서, 궁원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9년 전 육상묘 성립과 마찬가지로, 1752년(영조 28) 12월 22일에 올라온 생원 李世熙(1709~1755)의 상소가 계기를 제공했다. 이세희는 조중희와 상반되는 사친추송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는 자신의 뜻을 억측하여 모욕했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영조는 이세희의 상소를 빌미로 효를 다하되 과용하지 않는 사친의례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세희 상소의 배경은 1752년 12월의 선위파동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의 선위 주장은 정성왕후 회갑에 따른 진하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11월 17일 영조는 정성왕후 회갑 잔치와 진하를 윤허했다가 내시의 실수라며 반복했다. 자신의 탄일 잔치는 왕세제 때부터 진하를 받지 않는 권정례 방식이었는데, “중전이 진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하들이 거듭 진하를 청하자, 영조는 다음 해 봄인 자신의 회갑 진하를 원치 않기 때문에 중전의 회갑 진하를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⁵³⁾

신하들은 청원을 계속하면서, 회갑 진하를 받은 숙종을 繼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조는 숙종 회갑 때 자신은 사친을 위한 心喪중이어서 진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회상하면서, 진하받기를 거부했다.⁵⁴⁾ 12월 5일에는 진하받는 것을 불효로 간주하면서 송현궁으로 거동했고, 인원왕후의 자교를 받들고 나서야 환궁했다.⁵⁵⁾ 12월 8일에는 선화문 밖으로 나가 세자에게 선위할 것을 선언했다. 영조는 정사를 보는 회정당에 다시는 앉지 않겠다

53) 『승정원일기』 제 1088책, 영조 28년 11월 17일 “上曰, 予自世弟時, 不受誕賀, 坤殿何可受之乎? 中官誤下草記矣. … 上曰, 今番陳賀, 若爲之, 則諸臣於明年春, 援引庚子舊例, 與元良必來強請, 予爲此懼, 不爲之矣. 明年及周甲, 勿請可矣. 昌諡曰, 人子遇父母周甲, 則其心當如何, 臣等之心, 姑捨勿論, 東宮邸下, 聞此下教, 必將缺然, 自上豈無俯體之道乎?”

54)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己丑.

55)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辛卯.

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선화문 밖에 서 있었다. 세자와 신하들이 거듭 요청하고 인원왕후가 수차례 자교를 내렸으나 영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친히 회정당에 나아간 인원왕후는 “내가 추운 궁전에서 병이 날까 염려된다”는 말로 영조의 불효를 지적했고, 영조는 어쩔 수 없이 대내로 들어갔지만 선위전교를 철회하지 않았다.⁵⁶⁾

영조는 신하들의 청대를 받지 않았고, 승정원에서 올린 공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12일에는 다시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선화문에 나가 『시경』의 「육아」편을 3번 읽었다.⁵⁷⁾ 14일에는 선화문에서 한밤중까지 「육아」편과 세제책봉을 사양했던 「辭世弟冊封疏」 3편을 읽었다. 이날 영조의 지나침을 비판한 박문수뿐만 아니라 선위전교를 받들지 않은 모든 신하들이 유배형에 처해졌다.⁵⁸⁾

다음날인 12월 15일, 영조는 육상묘에 전배하고 효장묘에 들른 후 잠자인 창의궁으로 행행하여 선위를 명했다. 세자는 급히 의장도 갖추지 않고 창의궁으로 달려갔다. 영조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동궁이 오지 않으면 온들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여 세자와 신하들의 애를 태웠다.⁵⁹⁾ 세자는 밤새 엎드려 상소를 올렸지만 끝내 영조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파루 후에 환궁했다.⁶⁰⁾

16일에 세자와 신하들은 선위의 뜻을 거두고 환궁할 것을 거듭 청했지만, 영조는 세자가 창의궁에 오면 수라를 들지 않고 북한산 행궁으로 이어하겠다고 압박했다.⁶¹⁾ 17일에 신하들의 상소가 이어졌고, 시전상인들도 상소를 올리며 환궁을 요청했다. 세자가 창의궁에 나아가 7번 아뢰고 영부사 김재로의 청원으로 인원왕후가 두 번이나 자교를 내리자, 영조는 환궁을 결정했

56)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甲午.

57)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戊戌.

58)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庚子.

59) 『승정원일기』 제 1089책, 영조 28년 12월 15일 “俄聞領府事, 請對於大朝, 則口傳下教曰, 東宮若不來, 則予當卽入溫垓云矣. 令曰, 於此於彼, 俱爲罔極, 寧進而泣諫矣. 急急舉行, 以次退出. … 壬申[辛丑]十二月十五日罷漏後, 王世子坐時敏堂月臺.”

60)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辛丑.

61)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壬寅.

다. 18일에 선위전교를 철회하고 “정말 다시 즉위한 것”과 같다는 유시를 내림으로써, 선위과동이 마무리되었다.⁶²⁾

그런데 4일 후인 12월 22일에, 이세희는 대리청정 중인 세자에게 영조의 마음을 헤아려 숙빈을 왕후로 추송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선화문에서 『시경』 「육아」편을 외우시고 육상묘에서 합문을 단으셨으니, 성상의 뜻한 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도성의 품문을 인용하면서 순임금과 같은 영조의 효성을 칭송했다. 이어 한나라 문제와 송나라 인종 등의 사례를 들어 사친추송의 정당성을 피력했다.⁶³⁾ 신하들은 창의궁을 육상묘로 잘못 쓰고, 영조의 뜻을 억측한 문제를 지적했다. 세자는 영조가 격노할 것임을 두려워하며 승지를 보내 아뢰도록 했다.⁶⁴⁾

상소를 읽은 영조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친국을 명했다. 이세희는 李觀厚의 옥사에 연루된 형 李時熙를 구명하기 위해 망령되이 영조의 뜻을 억측하여 상소를 올렸다고 자복했다. 또한 “지난번 주상께서 『시경』의 「육아」편을 강하신 것은 효성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소를 올릴 만하다”는 許槃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세희는 사형을 감하여 섬으로 귀양보내고, 허반과 그의 오촌숙부 許潛, 그리고 이시희를 모두 변방으로 귀양보냈다.⁶⁵⁾

다음 해인 1753년(영조 29) 6월 3일 가뭄으로 인한 疏浚이 진행되면서, 이세희의 상소가 다시 언급되었다. 영조는 이세희 상소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내가 선왕 후궁의 아들인 것을 누가 모르는가? 이미 이 자리에 앉은 후에 조신들이 나의 근본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로 신하들을 압박했다. 박천보와 김상로 등은 그러한 마음은 역심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영조는 “지난번 정한 묘호를 추송으로 보니 어찌 영화롭지 않겠

62)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癸卯.

63)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戊申.

64) 『승정원일기』 제 1089책, 영조 28년 12월 22일 “復明白, 渠何敢聽逆上意, 筆之於書乎? 令曰, 告于大朝後, 處之, 何如? … 樂性曰, 彰義宮閉閣之事, 以毓祥廟閉閣爲言, 渠豈不知乎? 令曰, 大朝聞此, 則必大段激惱矣. … 令曰, 余意則承旨一人在此, 二人詣大朝講對好矣. 諸臣俱曰, 好矣, 遂退出.”

65) 『영조실록』 권78권, 28년 12월 戊申; 『영조실록』 권78, 28년 12월 己酉.

는가?”라고 비꼬면서, 지난 일을 하나씩 지적하며 울분을 토로했다. 1724년(영조 즉위)에 이광좌가 사친을 위해 사우를 세울 것을 진달하자 오명준이 아첨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일, 1726년(영조 2) 李秉常이 사묘 전배 시 賞典이 지나침을 지적하면서 덕흥대원군묘의 전례를 따르라고 비판한 일 등을 지적했다.⁶⁶⁾ 金始衛, 金漣, 조중희 등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모두 名流인가? 명류들이 어찌 모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겠는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오열하면서 『시경』 「육아」편을 외었다.⁶⁷⁾

6월 7일에도 영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밝히는 대신, 지난 사건들을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신하들의 불충을 비판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상하가 소통하지 못해서라든가,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일부러 ‘庶’자를 쓰지 않는 것은 마음 속에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트집을 잡았다. 또한 사묘 앞길에서는 輿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 승지를 거론하면서 “신하된 자들이 그 임금의 어머니를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묘호만을 정했을 뿐임에도 ‘명류’라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명류들이 비판할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조운명은 “무릇 신하의 도리는 지나치면 다투고 할 만하면 하는 것”이라고 아뢰면서 영조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⁶⁸⁾

6월 25일 되어서야 영조는 “이세회의 상소는 교묘하고도 참혹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나의 뜻은 바로 두 글자의 諡號에 있다”라고 자신이 원하는 사친의례를 제시했다. 영조는 숙빈의 봉작 60주년을 맞이하여 시호 외에 달

66)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3일 “敎曰, 世熙疏中一句語, 予不忍誦之, 而予自彰義宮以後, 一則無面歸拜皇兄也, 一則諸臣皆待予以非文非武, 予甚傷痛矣. 誰不知予爲先王側室子? 而既居此位之後, 朝臣不當說予根本矣. 天輔·尙魯等曰, 豈有如許臣子乎? 若或如此, 則是逆也, … 頃年已定廟號, 視之追崇, 豈不榮乎? … 故領相李光佐, 有所陳達, 而吳命峻, 以爲諂耳, 此豈不過乎? 其後或有以依大院君例爲之之論, 而李秉常有所云云, 又有勸予以哀衣拜私廟者, 豈可以紅色服入於親廟乎? 此則欲使予待私親以諸廟, 例也.”

67) 『영조실록』 권79, 29년 6월 丁亥.

68)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7일 “上曰, 宜其不雨矣. 君臣之阻隔如此, 何望得雨乎? … 予自嗣服之初, 見辱於名流多矣. 予非有過之意, 亦有大院之例, 而此亦不爲之, 只立廟號矣. 予欲爲此, 則名流又將以爲何如耶? 允明曰, 大凡臣子道理, 過則爭之, 可爲則爲之者, 是乃道理也. 若爲適情合禮之事, 則典禮自可適中矣, 誰以爲如何耶?”

리 추보하는 방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원왕후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자교를 제시했다, 영조 자신은 16자의 尊號를 받으면서 사친에게는 한 글자도 올릴 수 없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전은군이 주장했던 왕후추숭이나 이광좌가 제기한 大嬪 칭호와 구분하면서 시호의 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⁶⁹⁾ 신하들은 “인정과 예문에 합당”하고 “천리와 인정에 당연”하다고 칭송하며 즉시 분부를 받들겠다고 앞장섰다.⁷⁰⁾

영조는 신하들의 답변을 들은 후, “이것은 나의 털끝만큼도 사사로운 뜻이 아니고 터럭하나만큼도 과용의 뜻이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이어 “시호가 정해지면 궁과 원으로 칭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새로운 궁원제도를 정비했다.⁷¹⁾ 巳時에 시호의 追上이 결정된 후 申時에는 신하들이 영조 앞에서 ‘和敬’을 시호로 議定했다. 9년 전 육상묘 성립과 마찬가지로 上諡와 궁원제 시행이 하루 안에 결정되었다.

2) 시호의 의미와 관제의 성립

‘화경’이라는 시호는 궁원제 성립의 근거가 되었고, 「궁원식례」의 편찬을 통해 궁원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육상궁은 더 이상 私廟가 아닌 官祭의 대상으로, 국가제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육상묘 성립 시 가인례와 봉사자 선정을 전제로 왕의 친제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국가제사로서 육상궁의 위상이 강조되었다.

영조는 “우리나라의 가법이 엄하여 내가 사친에게 시호 2자를 올리는 것 외에 달리 보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호를 올리는 별도의 의절을

69) 『영조실록』 권79, 29년 6월 己酉.

70)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5일 “乾隆十八年癸酉六月二十五日巳時, 上御涵仁亭. … 尙魯曰, 今此下教之間, 亦可見上下情志之阻隔, 臣實以此憂之矣. 以殿下之孝思, 思所追報, 天理人情之所當然也, 其所以追報之者, 如合情文, 則在下者, 孰敢有異議乎? … 天輔曰, 臣等今承下教, 可謂允合於情文, 臣等當奉承矣. 既已議諡, 則自奉常寺官祭, 永爲不遷之位, 然後無歎於聖上追報之心, 而雖以典例言之, 可以得當矣.”

71) 위의 책 “上曰, 此非予毫分私意, 亦無一毫過隆之意, … 上曰, 今既定議諡, 毓祥廟當稱宮, 昭寧墓當稱園, 以今日典監, 爲守園官好矣.”

행하지 않고, 다음날인 6월 26일에 친히 告祭를 지내고 신주를 다시 쓰겠다고 명했다.⁷²⁾ 이를 위해 축식과 신주식에 대한 논의가 급하게 이루어졌다. 왕후추송은 아니지만 묘호를 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호에 따른 事體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축식의 경우, 정통에 壓尊됨을 원칙으로 ‘妣’를 쓰지 않고,⁷³⁾ 다만 ‘敬祭’를 ‘敢昭告’로 고치도록 명했다.⁷⁴⁾ 신주식의 경우, 효순현빈의 예에 따라 ‘제왕가’의 방식으로 ‘和敬淑嬪神主’라고 고쳐 썼다. 기존의 숙빈 신주는 사대부의 신주식인 ‘본관+성씨+신주’ 앞에 작호를 더해 ‘淑嬪首陽崔氏神主’라고 썼다.⁷⁵⁾ 반면, 세자빈인 효순현빈의 신주는 앞면에 ‘시호+작호+신주’ 형식으로 ‘孝純賢嬪神主’라고 쓰고, 陷中에 성씨를 썼다. 이에 따라 숙빈의 신주 앞면에 시호인 ‘화경’을 추가하고, ‘본관+성씨’인 ‘수양최씨’를 삭제했다.⁷⁶⁾

동시에 숙빈의 ‘嬪’을 ‘妃’로 개칭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익정은 압존을 위해 ‘妣’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궁원의 사체에 맞게 ‘妃’로 칭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들은 일제히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의 경우, 황제의 정처를 后, 후궁을 妃로 구분하므로 이에 따르면 숙빈에게 ‘妃’자를 사용할 수

72)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5일 “乾隆十八年癸酉六月二十五日申時, 上御涵仁亭. … 上曰, 我朝家法嚴矣. 予於私親, 二字加諡外, 無他可報之道矣. … 和敬儘叶予意, 今日後予無憾矣. 明日當親往毓祥宮, 行告由祭, 親自題主, 依此舉行也, 若魯曰, 今既定諡, 親臨告由, 則似無上諡一節矣. 上曰, 然矣.”

73) 『승정원일기』의 ‘妣’자가 『영조실록』에는 ‘妃’자로 되어 있다(『영조실록』 권79, 29년 6월 己酉 “上曰, 祝文中不敢稱妣, 壓尊之故也.”) 압존을 이유로 ‘稱妣’하지 못하는 대신 이익정의 ‘稱妃’의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영조실록』의 ‘妃’는 ‘妣’의 오류로 추정된다.

74)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모두 ‘敬告’를 ‘昭告’로 고친다고 되어 있지만, 앞서 논의된 육상묘의 축식과 7월 27일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라 ‘敬祭’로 교감했다(『승정원일기』 제 1096책, 영조 29년 7월 27일 “上曰, 名不正則言不順, 前者不曰敢昭告而曰敬祭, 頃始曰敢昭告矣.”)

75)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되면서, ‘某親’과 ‘傍題’를 삭제하고 ‘封貫姓氏神主’로 신주를 개제했다(『승정원일기』 제 537책, 경종 2년 2월 18일 “又以禮曹言啓曰, 王世弟私親神主改題事, 命下矣. … 神主去某親字及傍題, 只以封貫姓氏神主題之, 恐合事宜.”). 그러나 장서각에 소장된 영빈이씨 신주식을 전거로 작호인 ‘숙빈’을 가장 앞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暎嬪李氏題主原文』(RD02470) “暎嬪全義李氏神主”).

76)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5일 “益姪曰, 凡事一依孝純墓例舉行爲教, 則園所丁字閣, 亦當營建, 宮園親行攝行祭祝文, 亦可講定矣. 上曰, 祝文中不敢稱妣, 壓尊之故也, 前日敬告字, 今當改以昭告, 亦當書國王某矣. … 又教曰, 明日予當親自題主, 粉面改題之時, 不當書姓貫耶? 在魯·天輔·尙魯皆曰, 似不當書矣. 在魯曰, 如孝純宮例, 似好矣. 上曰, 姓氏當書之耶? 在魯曰, 孝純賢嬪神主書之者, 帝王家, 例也, 上曰, 宗廟亦不書, 而祝文則書之矣. 在魯曰, 坎中已書姓氏, 則亦不宜書之矣.”

있다. 그러나 제후국 조선의 왕비는 원칙적으로 ‘후’자를 쓸 수 없는데, 權道에 따라 종묘에 모실 때만 ‘후’자를 사용했다. 따라서 조선의 경우, 숙빈을 비로 칭하면 적적인 왕비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천보는 ‘비’로 칭한다면 ‘宮’을 ‘殿’으로 ‘園’을 ‘陵’으로 칭해야 한다며 비판했고, 영조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랐다.⁷⁷⁾

고제를 지낸 다음 날인 27일에 영조는 시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과용하지 않고 효를 다하기 위해, 義起의 방식으로 시호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조는 漢·唐과 광해군 등의 왕후추송 전례나 ‘大’자를 더하는 경종대 大嬪 칭호를 따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 겨울 선위파동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의식하면서, “밖의 사람들은 필시 내가 처음부터 마음먹은 것을 지금 비로소 했다고 여기겠지만, 나는 그날 갑자기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명했다.⁷⁸⁾ 이어 궁원제의 정비를 논의하면서 「궁원식례」를 편찬하도록 했다.⁷⁹⁾ 「궁원식례」는 기본적으로 세자·세손 의례를 기준으로 삼아 사친의례를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⁰⁾

또한 소령원에 수원관을 임명하여 관제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⁸¹⁾ 소령

77)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5일 “益妊俄者以妣字壓尊之意, 有所下教, 而此妣字, 雖不可用, 今既稱宮稱園, 事體自別, 亦當稱妃字乎? 下詢大臣爲好矣. … 在魯曰, 若稱妃字, 窒礙於宮園處多矣. 臣意則恐不然矣. 祔廟一事, 亦豈不掣礙乎? 天輔曰, 妃字便是后字, 若稱妃則宮當稱殿, 園當稱陵, 豈不大段窒礙? 春秋竝尊之譏甚嚴, 今日議謚一節, 實有光於聖德, 而若行漢唐時王之制, 則亦豈聖上不欲過隆之本意乎? 尙魯曰, 僚相所達, 儘有意見, 大抵天子之國, 后妃之稱, 固有等分, 而諸侯之國, 只稱妃, 不得稱后, 禮也, 我朝入廟後稱后, 出於權矣. 以經常之道言之, 妃字, 爲中國后字之代, 今若稱妃, 則事有大段窒礙處, 有非聖上只上謚號之本意也. 上曰, 大臣言是矣.”

78)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7일 “上曰, 今月異於他月, 又爲今番事, 外人必以予爲自初有心, 今始爲之, 而予則其日忽然思得而爲之矣. … 我朝家法甚嚴, 予亦受昔年教訓, 心實不濫, 昨天下教之後, 外人必以爲尙有餘事, 而國家典禮, 當用古例, 中國則自漢·唐以來, 皆有前例, 而我朝則無之, 在前二次, 前例則雖有之, 予亦不欲追用, 至於一大字, 亦欲避之, 故依昔年所封之號爲之事, 頃已下教矣. 前例既無可引, 則義起之外, 更無他道, 予何處得例而爲大於此之舉乎? 今世人, 百爾揣度, 至以昨冬苦心, 亦爲有意, 豈不怪乎?”

79) 1753년(영조 29) 6월 27일 『궁원식례』 편찬이 시작되어 7월 8일에 정서 후 내입·봉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7~9월에 궁원제도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2개월만인 9월에 『궁원식례보편』이 편찬되었고, 1755년(영조 31)에는 『궁원식례』와 『궁원식례보편』을 교정하여 『궁원식례정본』을 인간하여 창의궁에 보관하게 했다. 『궁원식례』의 교정 과정은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80) 『궁원식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민혁, 앞의 논문, 참조.

묘 단계에서 세자묘를 관리하는 수위관 대신 전감을 둔 것은 추후 봉사자 선정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영조는 “만약 奉祀할 사람을 낸다면 구애되는 곳이 많으니 축문에도 구애가 있게 된다. 만약 종실을 祭官으로 삼는다면 봉사할 사람을 내지 않더라도 항상 봉사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⁸²⁾ 이로써 육상묘 단계에서 강조되었던 봉사자 선정을 번복하고, 궁원은 가인례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했다.⁸³⁾ 영조는 대원군 등의 奉祀之廟·墓와 세자 등의 官祭之廟·墓를 명확히 구분하면서,⁸⁴⁾ 관제의 대상인 궁원을 별도의 봉사자가 필요없는 국가제사로 편입시켰다.

이처럼 시호는 궁원제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었지만, 영조는 시호로 인해 궁원제가 성립되는 전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⁸⁵⁾ 물론 관제의 대상인 세자·세손 등의 廟·墓가 시호에 따라 효장묘·묘, 의소묘·묘로 명명된다는 점에서 시호와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의 사친인 계운궁의 毓慶園 조성 시에는 시호를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조는 시호를 근거로 궁원제를 선포했고, 선위파동에서부터 주도권을 빼앗긴 신하들은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영조는 “공자는 老聃에게 예를 물었는데, 나는 신하들에게 예를 구걸한다”라고 탄식하면서, 上諭冊印儀와 告廟 의례를 청하지 않은 신하들

81) 같은 해 9월 수위관은 守護의 ‘守’자와 奉祀의 ‘奉’자를 따서 守奉官으로 변경되었다(『승정원일기』 제 1098책, 영조 29년 9월 7일).

82) 『승정원일기』 제 1095책, 영조 29년 6월 27일 “上命任珣書宮園式例, 文秀曰, 昭寧園, 殿下當初艱辛得之矣. 山主不可無優報之道, 今若依皇明太祖皇帝故事, 使之世襲守園官則好矣, … 上曰, 若出奉祀人, 則多有窒礙處, 且祝文亦必窒礙, 今若以宗室爲祭官, 則雖不出奉祀人, 而常有奉祀人矣.”

83) 영조가 봉사자 선정을 번복한 것은 사친추송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현재의 연구자가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1748년(영조 24) 원종의 사친인 인빈의 봉사자 여친군이 역모에 휘말리는 사건을 목도하면서 영조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김윤정, 『儲慶宮의 성립과 의례적 변화 양상』, 『서울과 역사』 113, 서울역사편찬원, 2023, 115쪽).

84) 『승정원일기』 제 1098책, 영조 29년 9월 25일 “上曰, 小序中, 非官祭之廟墓與奉祀之廟墓云者, 次序未安. 大院君以下, 通稱奉祀, 則使官祭在上, 奉祀在下, 終是未安, 其次序易之好矣. … 上曰, 此小序厚矣. 非但予之子孫, 至於昭顯亦厚矣.”

85) ‘시호’라는 제도를 영조 대 국가전례화된 상존호 의식과 관련짓고, 왕후의 지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친을 추송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우정, 앞의 논문, 179쪽, 209쪽). 그러나 “궁원에 따른 추시”(195쪽)나 “궁·원승격→시호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송”(211쪽)이라 서술하여, 영조가 궁원제의 근거로 시호를 제시한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을 비판했다.⁸⁶⁾ 7월 27일 상시가 봉원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封園都監을 上諭封園都監으로 변경했고, 冊文은 承統한 妃嬪에게만 해당된다는 趙觀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자빈 의례를 기준으로 상시책인의의를 거행했다.⁸⁷⁾ 9월 1일에는 고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의 예는 나의 사적인 것이 아니다. 상시하여 봉원하고 이미 官祭를 지냈으니 국가의 막중한 예이다”라고 명시했다.⁸⁸⁾ 9월 4일 상시와 봉원을 종묘에 고유하고 이어 진하와 반교를 거행했다.⁸⁹⁾

10월 22일에는 축문의 호칭인 ‘사친’을 변경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아침의 소대에서 영조는 지난밤 누워서 생각하다 갑자기 깨달은 것이라면서 관제를 행하는 육상묘는 더 이상 私廟가 아니므로 ‘사친’ 2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가에서도 선비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사친’ 대신 ‘선비’의 호칭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예조판서 홍봉한은 사친과 사묘의 ‘私’자는 의미가 다름을 지적하면서, 사친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⁹⁰⁾

이러한 홍봉한의 답변은 육상묘 단계에서 ‘사친’과 ‘공사’의 사를 구분한 영조의 주장을 계승한 것이다. 영조는 사친과 사묘의 ‘사’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비’로의 개칭을 계속 시도했다. 먼저 ‘사친’이란 호칭의 불분명성을 지적했다. 대원군과 부부인도 모두 사친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후세에 분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였다.⁹¹⁾ 다음으로, 관제의 의미를 강조하

86) 『승정원일기』 제 1098책, 영조 29년 9월 1일 “上曰, 孔子問禮於老聃, 予則乞禮於諸臣, 此則往牒所無之事也. … 上曰, 頃於上諭之日, 告廟請諭, 可也, 而諸臣無一人發口者, 豈是乎?”

87) 『승정원일기』 제 1096책, 영조 29년 7월 27일 “上曰, 物有本末, 事有終始, 封園何自而出? 有上諭都監, 然後可有封園都監也, 而人無開口者矣.”; 『영조실록』 권80, 29년 7월 壬午.

88) 『승정원일기』 제 1098책, 영조 29년 9월 1일 “今者之禮, 非我私也, 上諭封園既官祭, 邦國莫重之禮, 而告廟頒教應行之節, 尙今遲延, 節節寒心, 莫甚於此, 一隅青丘, 有君乎? 有臣乎?”

89) 『영조실록』 권80, 29년 9월 丙辰.

90) 『승정원일기』 제 1099책, 영조 29년 10월 22일 “癸酉十月二十二日卯時, … 上曰, 予臥而思之, 忽有悟焉, 前則稱私廟矣. 今則不稱私廟, 既行官祭, 而尙有私親二字, 事涉如何, 私家亦稱先妣云, 此則異於妃字矣. 鳳漢曰, 私親之私字, 異於私廟之私字矣. 既是私親, 故有此崇奉之節, 有何未安之事乎?”

91) 『승정원일기』 제 1099책, 영조 29년 10월 22일 “上曰, 召卿非爲祭文, 有下詢事矣. 私親二字, 終不分明, 大院君·河東府夫人, 不爲各稱, 而只稱私親, 後世何以分別乎?”

면서, 위상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사친’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비’의 경전적 근거를 제시했다. 사친의 호칭은 경전에 없는 반면, 『이아』에서 ‘考妣’는 상하의 通稱이라는 원경하의 주장을 따르고자 했다.

그러나 상하 통칭인 ‘부모’와 달리 ‘고비’는 정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孝子라야 칭할 수 있다는 원칙은 확고했다. 이에 李廷龜의 『월사집』을 근거로 ‘사친’ 대신 ‘선자친’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⁹²⁾ 영조는 “나는 불만이 없다”는 선에서 사친을 대신하는 ‘선자친’의 호칭을 수용했다.⁹³⁾

1756년(영조 32) 육상궁에 ‘徽德’의 시호를 加上하면서, ‘선비’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영조의 자칭에도 ‘子’를 더해 ‘子國王諱’로 씌으로써, 영조의 숙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영조는 인원왕후의 자고를 근거로 시호의 가상을 결정하면서, “선자친 3자는 고금의 典禮에 없는 것으로서 축문을 읽을 때에 늘 겸연쩍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주례』와 『남궁록』의 창빈·인빈의 축문을 근거로 ‘선비’로 변경했다.⁹⁴⁾ 그러나 종묘의 ‘孝子嗣王臣諱’와 달리 ‘孝’자와 ‘臣’자를 빼고 ‘국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정통과의 차등을 명확히 했다. 영조는 성인군주로서, 누구보다 효를 다하되 과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4. 맺음말

성인군주를 지향하며 孝悌를 중시한 영조는 생모인 숙빈최씨를 위한 의례를 정비해 나갔다. 정통과의 구분이 강조되는 사친의례에서 적극적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전거와 논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선위전교와 국정과행을 서슴치 않는 노회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중회

92) 『승정원일기』 제 1126책, 영조 31년 12월 4일 “景夏曰, 先慈親三字, 其時臣以月沙集中言, 亦言及於領府事, 而時仍事遽, 未及博考典禮, 而月沙集, 已有前規, 若自上取覽, 則可知矣.”

93) 『영조실록』 권80, 29년 10월 癸卯; 『영조실록』 권80, 29년 11월 壬子.

94) 『영조실록』 권86, 12년 12월 癸卯.

와 이세희의 상소는 영조가 사친의례를 공론화하고 국가례로서 궁원제를 선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1744년 조중회 상소사건을 통해 육상묘가 성립되고, 영조의 친제가 공식화되었다. 영조는 지나친 사묘의례를 비판한 조중회의 상소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다. 정통과의 구분을 전제로 효를 실천하는 의례는 과용이 아님에도, '사사로움[私]'로 규정하는 것은 왕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조는 "사적인 일 속에도 공적인 것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私廟의 私禮라도 왕의 의례로서 공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구차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의례의 시행이 효를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축식을 제정하면서 廟·墓의 칭호를 정하고 제도를 정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상묘는 여전히 사묘로서 家人禮의 대상이었고, 영조의 親祭는 봉사자를 정하기 이전의 의례로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왕의 친제는 초월적인 힘을 갖기보다 가인례와 限時性을 조건으로 조율되는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1753년 이세희의 상소를 계기로 숙빈의 시호가 정해지고, 육상궁이 官祭의 공간으로 개편되었다. 이세희는 왕후추송을 주장하며 조중회와 상반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는 자신의 뜻을 억측하고 모욕했다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정통과의 구분을 지키기 위해 숙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義起의 차원에서 시호의 추상을 요구했다. 시호는 사례로 간주되던 육상묘 의례를 국가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영조는 시호를 근거로 궁원제와 관제의 시행을 단행했고, 이후 의례의 정비 과정에서 公私의 조율은 불필요했다. 또한 육상궁은 더 이상 私廟가 아니라는 명제를 토대로, 이후 축식에서 '妣-子'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육상궁은 효를 다하되 과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영조는 정통과의 구분을 강조하여 왕후추송은 불가능하더라도, 왕의 생모로서 그에 걸맞는 의례적 위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인식했다. 물론 그 기준은 신하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정통과의 차등이라는 원칙은 사친의례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육상궁의 성립은 ‘효제 논리’나 ‘왕의 친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궁원제의 성립은 고례와 전례의 검토 및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30년의 시간이 걸렸다. 단계적인 진행에 따라 육상묘에서는 가인례가 중시되었다면, 육상궁에서는 시호를 통한 관제의 성립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영조의 대응 논리를 통해, 당시 조선사회에서 후궁 사친의 의례적 위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헌증개수실록』, 『영조실록』, 『승정원일기』
- 『國朝五禮序例』,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 『사계전서』, 『良齋集』
- 「暎嬪李氏題主原文」(RD02470)
- 권용란, 「조선시대 왕실 조상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조선시대 왕의 사친(私親) 의례와 축문(祝文): 의묘(懿廟) 의례의 축문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5, 종교문화비평학회, 2019.
- 김윤정, 「大嬪宮의 연혁과 의례적 변화 양상」, 『한국문화』 10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 _____, 「儲慶宮의 성립과 의례적 변화 양상」, 『서울과 역사』 113, 서울역사편찬원, 2023.
- 김자현 저, 김백철 · 김기연 역, 『왕이라는 유산』, 너머북스, 2017.
- 문은희, 「영조대 毓祥宮式例 · 昭寧園式例의 制定과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박근진, 「조선후기 왕의 私親 宮園 연구: 칠궁과 원소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소현수 외, 「조선시대 사묘(私廟) 칠궁(七宮)의 공간구성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 송인호 · 조은주, 「王室私廟 毓祥宮의 20세기 變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 대한건축학회, 2011.
- 우정, 「영조대 숙빈 최씨 추승과 가상시호加上諡號의 의의」, 『국학연구』 51, 한국국학진흥원, 2023
- 이미선, 「숙종대 왕실여성들의 정치적 행보와 역할」, 『조선시대사학보』 93, 조선시대사학회, 2020.
- 이영춘,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 『戊戌苦次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 · 園 조성과 幸行」, 『장서각』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인복, 「조선중기 내수사(內需司)의 운영과 공사(公私) 논쟁」, 『역사교육논집』 70, 역사교육학회, 2019.
- 이현진, 「영 · 정조대 육상궁의 조성과 운영」,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 임민혁, 「조선후기 영조의 효제 논리와 사친추승」, 『조선시대사학보』 39, 조선시대사학회, 2006.
- 정경희, 「조선후기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4.
- _____, 「1755년 경혜인빈 김씨의 상시호 축책(竹冊)과 은인(銀印) 관련 물품의 제작 장인 연구 - 『敬惠仁嬪 上諡封園都監儀軌』 책임조성소의 분석을 통하여 - 」, 『역사민속학』 61, 한국역사민속학회, 2021.
- _____, 「조선후기 칠궁七宮 소장 목조감실과 왕실공예품의 보문寶文 연구」, 『인문과학연구』 38,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4.
- 정해득, 「조선후기 사친추승과 능원제도」, 『조선시대사학보』 86, 조선시대사학회, 2018.

The Public and Private Matter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of the Yuksang-gung in the King Yeongjo period

kim yunjung*

Yeongjo, who aimed for The Sage King and valued filial piety, needs to reorganize the ritual for his birth mother, Suk-bin Choi. In a private ceremony that presupposes distinction from orthodoxy, King Yeongjo demonstrated a seasoned political power that did not hesitate to depose and disrupt state affairs in order to practice filial piety more actively. The appeal of Jo Joong-hoe and Lee Se-hee was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Yeongjo to lead the maintenance of the private ceremony.

First of all, with the appeal of the Jojunghoe in 1744, the Onshore Tomb was established, and Yeongjo's paternity was officially established. Yeongjo emphasized the need for public regulation as a royal ritual, although it is Private, while advocating the logic that "there is something public even in private matters." Accordingly, while enacting the ceremony, the title of the shrine and tomb was designated and the government office was reorganized. In the course of these discussions, the Onshore Tomb was still the subject of family rites as a Private Shine and Yeongjo's paternity was justified as a ritual before selecting volunteers. Yeongjo's paternity ceremony could be formalized on the condition of family rites and limited time.

Next,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Yuksang-gung, which was established i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searcher

1753 with Lee Se-hee's appeal, into a national ritual was considered. After deciding on the name of Posthumous epithet, Yeongjo implemented the System of Gung and Won for this reason, and was able to reorganize the ritual of Yuksang-gung based on national rituals rather than cases.

Key words : Yuksang-gung, The System of Gung and Won, King's real mother, Public and Private Matters, Posthumous epithet